

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
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1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2. 7. 13.
4. 회부일자 : 2022. 7. 14.

II 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매각 계약 일정 및 금액 변동과 추가 매각 등으로 수입계획금액의 증감이 발생하고 관급자재 파동으로 인한 공사 추진 지연 등으로 지출계획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등 기금의 수입·지출계획금액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III . 주요내용

1. (수입계획) 총 12,785,649천원 증가
 - 교특회계전입금 14,845,978천원 증가(보통교부금 증액, 강남구 도곡동 산6-40 매각 계약 일정 및 금액 변동, 종로구 창신동 128-87, 강북구 미아동 791-2414 등 추가 매각 등)
 - 예치금회수 2,101,183천원 감소(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 반영)

○ 이자수입 40,854천원 증가(2022년 12월까지 예상 이자 수입 반영)

2. (지출계획) 총 12,785,649천원 증가

○ 비용자성사업비 5,933,812천원 감소(건설자재의 수급불안·가격상승 등 관급자재 파동으로 인한 공사 추진 지연)

(단위: 천원)

사업항목	당초계획(A)	변경계획(B)	증감(C=B-A)
본청시설관리(설계비)	13,784	13,784	0
본청시설관리(시설비)	41,078,455	34,952,845	△6,125,610
본청시설관리(감리비)	1,638,764	1,900,000	261,236
본청시설관리(시설부대비)	200,000	130,562	△69,438
직속기관관리(설계비)	50,000	50,000	0
합계	42,981,003	37,047,191	△5,933,812

○ 예치금 18,719,461천원 증가

3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: 천원, %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	
항목	2022년 수입액			항목	2022년 지출액			
	당초계획(A)	변경계획(B)	증감(C=B-A)		당초계획(A)	변경계획(B)	증감(C=B-A)	증감율(D=C/A)
합계	104,659,415	117,445,064	12,785,649	합계	104,659,415	117,445,064	12,785,649	12.2
교특회계 전입금	26,169,346	41,015,324	14,845,978	비용자성 사업비	42,981,003	37,047,191	△5,933,812	△13.8
예치금 회수	77,878,662	75,777,479	△2,101,183					
이자수입	611,407	652,261	40,854	예치금	61,678,412	80,397,873	18,719,461	30.4

IV. 참고사항

1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**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** 다만, **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**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3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4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호로 제출되어 2022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‘지방기금법’) 제8조¹⁾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,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%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²⁾.

1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2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<생략>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<생략>

○ 따라서 동 변경안 중 지출계획에서 ‘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’가 당초 지출금액 616억 7천 8백만원에서 803억 9천 8백만원으로 187억 1천 9백만원이 증가(30.4%)됨에 따라 동 기금운영의 변경계획은 지방기금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.

[표-1]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변경 내역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사업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율 (D=C/A)
수입합계	104,659,415	117,445,064	12,785,649	12.2%
자체수입	611,407	652,261	40,854	6.7%
이자수입	611,407	652,261	40,854	6.7%
기타	77,878,662	75,777,479	△2,101,183	△2.7
예치금회수	77,878,662	75,777,479	△2,101,183	△2.7
내부거래	26,169,346	41,015,324	14,845,978	56.7
전입금	26,169,346	41,015,324	14,845,978	56.7
지출합계	104,659,415	117,445,064	12,785,649	12.2
예비비 및 기타	61,678,412	80,397,873	18,719,461	30.4
예비비 및 기타	61,678,412	80,397,873	18,719,461	30.4
내부유보금 (예치금)	61,678,412	80,397,873	18,719,461	30.4
기관운영관리	42,981,003	37,047,191	△5,933,812	△13.8
교육행정기관시설	42,981,003	37,047,191	△5,933,812	△13.8
본청신설관리(신청사건립)	42,981,003	37,047,191	△5,933,812	△13.8

○ 이와 같이 예치금이 증가된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, 이는 공유재산 매각 금액 147억 7천 3백만원, 보통교부금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.

[표-2]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증가 내역

(단위 : 천원)

항목	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
교특회계전입금	보통교부금	19,200,000	19,272,821	72,821
	토지매각대금	6,969,346	21,742,503	14,773,157

- 먼저 보통교부금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교육부로부터의 지원금 성격의 예산으로 교육부는 2022년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총 192억 7천 3백만원의 예산을 교부하기로 하였고, 그 중 192억원은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7천 3백만원이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기금으로 전출된 것입니다.
- 다음으로 공유재산 매각은 총 3건(도곡동 산6-40, 창신동 128-87, 미아동 791-2414)의 토지 매각에 따른 것으로, 특히 도곡동 산6-40의 매각 가격이 144억 3백만원으로 전체 토지 매각 대금의 97.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[표-3] 공유재산 매각 현황

토지	매각대금	계약체결일
도곡동 산6-40	14,403,564	2022년 1월
창신동 128-87	166,139	2021년 12월
미아동 791-2414	137,815	2022년 5월

- 이와 관련하여 동 기금의 조성액을 살펴보면, 2021년도 말 동 기금의 조성액은 총 778억 7천 9백만원³⁾으로 이는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(1,137억원)⁴⁾의 68.5%에 불과한바,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동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3)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.

4) 총 사업비 1,229억원 중 2021년 기준 집행잔액(92억원)을 제외한 사업비

○ 특히 동 기금은 신청사 건립 이외 연수원 건립을 위한 재원⁵⁾도 마련해야 하는바,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토지 매각에 있어 매각대금의 타당성, 분납에 따른 징수 적절성 등 매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, 현재 불필요한 공유재산 현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매각하는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5) 연수원 건립 총 사업비: 33,736,000천원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